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구 미 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4.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공기업(구미도시공사)에 위탁 추진하여
나. 수상레포츠의 활성화와 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무명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나. 시설개요

1) 시설명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2) 소재지 : 구미시 수출대로 326-20

3) 주요시설

- 계류장 : 수상계류장(폰툰 218㎡), 슬립웨이(L=68m)

- 체험센터 : 체험센터 1동(2층, 538㎡)

4) 층별시설

구분		주요시설	비고
지상	1층	안내실, 창고	
	2층	사무실, 교육장, 샤워실	

다.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라. 수탁자 선정방식 : 공공위탁(구미도시공사)

마. 소요예산 : 280,000천원(2025년)

3. 부서의견

가.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는 다양한 수상레포츠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공공체육시설로서,

나. 수상레포츠의 활성화 및 부실 운영 방지하고자 공공체육시설 운영 전문 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 구미도시공사에서는 기존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궁도장, 파크골프장 등 수변 체육시설과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를 함께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4. 참고사항

가. 사진대지

나. 관계법령

-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
-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의5
- 4) 「지방공기업법」 제2조
- 5)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다. 비용추계서

사진대지

□ 위치도



□ 현장도



관계법령

□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입찰의 성립 및 참가자격) ①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은 입찰참가 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이 입찰하여야 성립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일반입찰과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제한입찰 및 지명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신고를 받았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2. 수탁받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았을 것

제19조의3(입찰참가자 자격 제한에 의한 계약)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에 따른 위탁료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경우
2. 위탁하는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수한 기술 또는 관리능력이 요구되는 계약의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위탁 계약 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관리능력 또는 관리실적
2.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관리위탁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 상황 또는 그 관리위탁과 같은 종류의 수탁 실적
3. 제1항제3호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재무상태

제19조의4(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관리기술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관리위탁의 수행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제19조의5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한 관리위탁을 수탁받기 위하여 신청을 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한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마을상수도사업은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만 해당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을 포함한다)·토지 또는 공용·공공용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

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경
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민간인의 경영 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
지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은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
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를 준용할 수
있다.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
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구미도시공사 위탁 시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세출 발생
-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운영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직접인건비	137,977,000	근무인원 5명 기준 (일반직 1명, 기간제 4명)
	퇴직급여	5,025,000	
	소계	143,002,000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00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전환사업)
	일반운영비	40,992,000	
	여비	1,920,000	
	재료비	1,050,000	
	수선유지비	23,608,000	계류장 부유물 청소비 등
	동력비	9,720,000	
	관서업무비	1,200,000	
	사회보험부담금	14,308,000	4대보험 회사부담분
	배상금등	600,000	
	반환금	600,000	
	소계	133,998,000	
자본 예산	자산취득	3,000,000	VPN 장비(구미도시공사 문서 시스템)
	소계	3,000,000	
합 계		280,000,000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세입	사용료 수입	0	3,000	5,000	5,150	5,300	18,450
세출	전출금	280,000	288,000	297,000	305,000	315,000	1,485,000
□ 총 비용(a-b)		Δ280,000	Δ285,000	Δ292,000	Δ299,850	Δ309,700	Δ1,466,550

※ 물가반영률 연 3% 적용

※ 2025~2026(2년) 무동력 수상레포츠 무료 운영

※ 2025년 동력 수상레포츠 임시 운영(무료)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국 비	0	0	0	0	0	0
	도 비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시 비	260,000	268,000	277,000	285,000	295,000	1,385,000
	민 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합 계	280,000	288,000	297,000	305,000	315,000	1,485,000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인건비	일반직 보수	49,644,000	일반직 1명, 기간제 4명
	기간제근로자 보수	88,333,000	
	퇴직급여	5,025,000	일반직 퇴직급여
	소계	143,002,000	
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40,000,000	해양레저스포츠교육프로그램 (전환사업)
	일반운영비	40,992,000	
	공공요금및제세	15,710,000	보험료, 통신비 등
	사무관리비	10,670,000	홍보비, 일반수용비 등
	복리후생비	6,573,000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차량선박비	4,200,000	유류대
	기타	3,839,000	
	수선유지교체비	23,608,000	
	부유물 청소	12,000,000	3,000,000원 × 4회
	장비 유지보수	5,200,000	
	시설 유지보수	5,000,000	
	기타	1,408,000	
	동력비 및 재료비	10,770,000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배상금등	600,000	배상책임보험 자기부담금
	사용료 반환금	600,000	
	연금부담금등	14,308,000	일반직·기간제근로자 4대보험 회사부담금
	여비	1,920,000	
	관서업무비	1,200,000	
	소계	133,998,000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3,000,000
소계		3,000,000	
합계		280,000,000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권 순 모
	팀 장	김 현 준
	담 당 자	강 설 아 (480-4925)